

[붙임. 1]

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- 호

‘연령금지’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

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(適正)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 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,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일부 연령대에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연령금지¹⁾ 의약품 추가성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1월 일
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‘연령금지’ 의약품 추가성분

연번	성분명	금지연령	비고
1	Pimecrolimus	2세 미만	외용
2	Lindane	3세 미만	외용
3	Isopropylantipyrine 함유 제제	15세 미만	
4	Ketoprofen 함유 외용제 (-Lysinate 포함) (분류번호 : [02640])	15세 미만	외용
5	Ketoprofen Lysinate (분류번호 : [02310])	6세 미만	외용
6	Bicalutamide	12세 미만	
7	6β-Iodomethyl-19-norcholest-5(10)- en-3β-ol(¹³¹ I)	18세 미만	
8	Silver sulfadiazine	2개월 미만	외용
9	Lidocaine + Prilocaine	3개월 미만	외용

1) 연령금지 의약품

; 약물의 흡수, 분포, 대사,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(소아 등)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